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 공고 제2020-242호,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0.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평가 기준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①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②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 축소라고 할 수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 이라고 함)은 이러한 핵심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수사기관 사이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는지가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이 이러한 핵심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형해화하고 있다고 판단함.

2.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한계

- 수사권조정은 검찰의 기능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지향하고 있음. 검찰을 법률적 판단을 통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며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사의 개시 단계 이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래에서 보는 시행령의 문제점은 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 기소 분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수적임.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문제점

-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는 검경이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경우 중 하나로 경찰이 조사자로서 공판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검찰작성 피의사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공판에서 경찰의 조사자 증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절차의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객관적인 증언을 해야 할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개정 형사소송법 자체만으로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려 있음. 검경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함. 나아가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됨. 현재 법원의 대물적 강제처분이 광범위하게 발동되는 영장 발부 실무를 감안하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찰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하는 것임.

-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경합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에도,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검사의 이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있는바, 이는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수사경합 시 검사의 영장청구(법원에 접수), 경찰의 영장신청(검찰청에 접수)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에 우선권을 가지기 위한 영장 청구의 남용이 우려됨.

-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 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는 수사과정상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사중지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기록을 송부하고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임. 수사중지를 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수사 지휘로 기능할 수 있음.

-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은 검사의 결정의 한 유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보완수사요구를 검사의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인정할 이유가 없음.

-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단서에서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당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판단에 있어 검경의 판단이 다를 소지가 있고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음. 또한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 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번 시행령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 사건관계인의 법률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음. 끝.